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0. 2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53호로 2023년 5월 4일 차인영 의원으로부터 발의  
되어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주최·주관이 없는 지역 옥외행사(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사항을 마련하고, 구민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가 적용되는 옥외행사의 대상과 용어 규정 명확화(안 제2조)
- 나.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 범위 개정(안 제3조)
- 다. 구의 관할구역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구민의 책무규정 신설(안 제5조)
- 라. 옥외행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주관부서의 역할 조항 신설(제7조)
- 마.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규정 신설(안 제11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10. 18. ~ 10. 22.)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 주최·주관이 없는 지역 옥외행사(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사항을 마련하고, 구민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를 추가하여 조례를 보다 명료히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기존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에서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옥외행사 및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와 더불어 ‘주최·주관 없는’ 옥외행사까지 조례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구민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제출 기한을 행사개시 ‘5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개정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 에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주관부서의 역할을 신설하여 주관부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심의요청하도록 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긴급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행사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보강하였고,
  - 안 제12조에서는 행사보험 가입 및 안전관리비 확보 등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신설하였음.

## ○ 검토 결과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옥외행사를 포함한 각종 행사들이 활발히 열리는 가운데, 작년 이태원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참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조례의 적용범위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옥외행사’와 함께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까지 포함하였으며, 그 밖에 주관부서 역할 명확화, 긴급안전조치 사항 보강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구민이 안심하고 옥외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자료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

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3 공연법

-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 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